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4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조인철 · 장종태 · 양부남
한정애 · 박희승 · 박용갑
서삼석 · 정준호 · 이해민
안도걸 · 박수현 · 최혁진
박지혜 · 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금년 중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사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가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시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 외에도 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확인조치를 불응하거나 임시 조치 해제 후에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하여,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4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시스템”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및 계좌를 상시적으로 탐지 및 점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개선계획의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전산시설 및

조직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제2조의4의 제목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조직, 전산설비(전기통신금융사기탐지시스템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금”을 “입·출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확인조치”를 “본인 및 해당 계좌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이하 “의심계좌확인조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조의5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본인확인조치”를 “의심계좌확인조치”로,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을 “통지·해제, 의심계좌확인조치, 사기관련의심계좌의 해지 및 계좌의 한도제한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심계좌확인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⑦ 금융회사(금융회사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의6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2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사기관련의심계좌(제2조제8호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를 말한다)에 대한 의심계좌확인조치”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피해환급금, 부당이득

반환 등 일체의 피해의 회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 피해자가 범인이 아닐 것
2.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것
3.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나. 투자, 출자, 금융상품의 매수·가입 등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다만, 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법상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피해보상의 판단·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 및 동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3.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체·송금 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체·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날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3항 중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제2조제8호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의2 중 “제2조의5제4항”을 “제2조의5제6항”으로, “본인확인조치”를 “의심계좌확인조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9. <u>“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 시스템”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및 계좌를 상시적으로 탐지 및 점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u>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 ---- 개선계획의 제출-----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

1. · 2. (현행과 같음)

3.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전산시설 및 조직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조직, 전산설비(전기통신금융사기탐지시스템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출금

1. 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대통령령---- 사기관련의심계좌---

2. ----- 사기관련의심계좌-

② ----- 본인 및 해당 계좌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이하 “의심계좌확인조치”라 한다)---

<신 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 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의
의심계좌확인조치 -----
----- 사기관련의심계좌-----

-----.

⑤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심계좌확인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 · 송금 · 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⑥ ----- 제2항부터 제5항
까지----- 통지
· 해제, 의심계좌확인조치, 사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생략)

② ~ ④ (생략)

기관권의심계좌의 해지 및 계좌의 한도제한을 -----

-----.

⑦ 금융회사(금융회사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4항 또는 제2조의5제5항-----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
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
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
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2. (생략)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
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5.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제4조(지급정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사기
관련의심계좌(제2조제8호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를 말
한다)에 대한 의심계좌확인조
치 -----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피해자
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피해환급금, 부당이득반환
등 일체의 피해의 회복과 관련
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 피해자가 법인이 아닐 것

2.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것

3.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나. 투자, 출자, 금융상품의 매수·가입 등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다만, 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

액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
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금융회사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법상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피해보
상의 판단·처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 및 동의 요청에 협조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
우

3.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체·송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리고 거래지
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음
에도 피해자가 이체·송금하
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u>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날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u> <u>5.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u> <u>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③ ----- ----- ----- ----- ----- ----- ----- -----

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u>피해의심거래계좌</u>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 ----- <u>제2조제8호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u>----- -----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 ----- ----- ---.
1. 2. (생략) 2의2. <u>제2조의5제4항</u>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또는 <u>본인확인조치</u>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1. 2. (현행과 같음) 2의2. <u>제2조의5제6항</u>----- ----- ----- <u>의심계좌확인조치</u>----- ----- -----
2의3. ~ 7. (생략)	2의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